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자문을 하는 경우 그 진단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안 제7 조제1항)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됨에 따라, 그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확대함.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조치사항(안 제18조제1항 신설)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등을 정함.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해당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정함.

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10. ~ 4. 21., 4. 18.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25명”을 “28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3. 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진단·자문”을 “진단(대상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취약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진단을 포함한다)·자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매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년 해야 하며, 해당 연도 마지막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교육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제2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업무 지원

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21조제2항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① ----- ----- ----- <u>28명</u>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신 설>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 <u>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u>내부 규정의 제정·개정</u>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u>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 담인력의 지정</u> 3. 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의 통 <u>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 안</u> 4.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u>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 료의 보호</u> 5.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

① · ② (생략)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
· 자문

나. (생략)

2.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생략)

②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

문인력의 관리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 진단
(대상기관이 운영하는 전
산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취약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진단을 포함한다) · 자문

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교육을 매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 매년 해야 하며, 해당 연도 마지막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교육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제2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것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업무 지원

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상기관에

<u><신 설></u>	<u>대한 제공 업무 지원</u> <u>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u>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의 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u> <u>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